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Doum 6-ro 42,
Sejong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Korea/30112
(Tel)82-44-215-4432
(Fax)82-44-215-8076

July 30, 2025

Embassy of Chinese Taipei in Seoul

6th Fl., Gwanghwamun Bldg.,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code), I would like to hereby inform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termined to impos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Petroleum Resin' originat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Chinese Taipei, pursuant to Article 56 of the Customs Act.

Please find attached Decree No. 1139 issu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formally enacts this anti-dumping duty. It would be grateful if you make the Decree known to relevant authorit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st Regards,

Lee Jongsu
Director
Industrial Tariff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Attachment> Decree No. 1139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7. 11.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형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형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3.07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쑤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50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6
	4. 그 밖의 공급자	3.50
대만	5.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켄(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6. 추옌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7. 그 밖의 공급자	7.07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